

## 서울가정법원

### 결정

사건 [REDACTED] 간접강제

신청인 [REDACTED]

주소 [REDACTED]

국적 미합중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정진경
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

피신청인 [REDACTED]

사건본인

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사건본인들 주소 [REDACTED]

### 주 문

1. 피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,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이

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
3.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 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때까지 1일 1,000,000원씩 지급하라.

## 이 유

아동반환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심판의 내용, 심판 이후 민사집행법상 직접집행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의 집행경과(피신청인은 감치명령에 불응한 채 어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잠적한 상태이다) 등에 비추어 보면, 사건본인들의 인도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, 나아가 사건본인들이 인도되지 않을 때 신청인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,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때까지 1일당 5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3. 2. 5.

관사 박기주



열람응

정본입니다.

2023.02.07

서울가정법원

법원주사 김용진

